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18(월) 10:00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6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818,763,965천원(일반 785,953,596천원 특별 32,810,3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계		818,763,965	734,968,659	710,356,657	21,882,868	2,729,134	83,795,306
일반회계		785,953,596	711,465,630	687,067,128	21,669,368	2,729,134	74,487,966
특별회계		32,810,369	23,503,029	23,289,529	213,500	0	9,307,340
	의료급여기금	682,598	590,000	590,000		-	92,59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591,400	591,400	591,400		-	
	주차장	31,536,371	22,321,629	22,108,129	213,500	-	9,214,742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369,263,337	350,874,098	18,389,239	5.24 %
	복 지 정 책 과	18,355,204	12,680,872	5,674,332	44.75 %
	복 지 지 원 과	80,845,028	78,039,999	2,805,029	3.59 %
	어 르 신 장 애 인 과	167,692,817	157,837,034	9,855,783	6.24 %
	가 족 정 책 과	84,888,039	85,274,361	△386,322	△0.45 %
	아 동 청 소 년 과	17,482,249	17,041,832	440,417	2.58 %
푸 른 미 래 도 시 국		34,766,416	26,111,712	8,654,704	33.14 %
	주 택 과	606,065	609,028	△2,963	△0.49 %
	도 시 계 획 과	1,994,790	1,967,803	26,987	1.37 %
	주 거 정 비 과	1,520,557	1,534,087	△13,530	△0.88 %
	공 원 녹 지 과	30,149,292	21,497,027	8,652,265	40.25 %
	건 축 과	495,712	503,767	△8,055	△1.60 %
문 화 환 경 국		70,879,828	69,065,243	1,814,585	2.63 %
	문 화 체 육 과	28,060,647	25,994,016	2,066,631	7.95 %
	청 소 행 정 과	40,151,023	40,585,573	△434,550	△1.07 %
	환 경 과	2,324,701	2,143,536	181,165	8.45 %
	부 동 산 정 보 과	343,457	342,118	1,339	0.39 %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교 통 건 설 국	78,755,485	54,016,120	24,739,365	45.80 %
교 통 행 정 과	3,218,090	1,884,175	1,333,915	70.80 %
주 차 관 리 과	53,707,457	33,144,645	20,562,812	62.04 %
건 설 행 정 과	302,169	301,468	701	0.23 %
도 로 과	11,091,321	9,546,943	1,544,378	16.18 %
치 수 과	10,436,448	9,138,889	1,297,559	14.20 %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A+B)	기 정 액			2회추경(안) (B)	비 고
		소계(A)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23,289,529	23,289,529	23,289,529		0	
의료급여기금	소 계	590,000	590,000	590,000	-	0
	정책사업	590,000	590,000	590,000		
	재무활동	0	-			
	행정운영경비	0	0			
생활안정기금	소 계	591,400	591,400	591,400	-	0
	정책사업	591,400	591,400	591,400		
주차장	소 계	22,108,129	22,108,129	22,108,129		0
	정책사업	20,768,746	20,768,746	20,768,746		0
	재무활동	660	660	660	-	
	행정운영경비	1,338,723	1,338,723	1,338,723		

5. 복지가족국 부서별 주요 편성안

○ 일반회계

(단위:천 원)

세 부 사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2회 추경(안) ②
복지정책과				
광복회 금천구지회 사무실 이전	- 임차보증금, 부동산중개 및 전세권 등기 수수료, 이사비용, 월임차료, 사무실 집기 구매	25,850	-	25,850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기간 : `23. 11. - `24년 사업 선포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용역비 등	23,000	13,000	10,000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 인건비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감소정 (시50:구50)	152,394	174,898	△ 22,504
복지지원과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감소정 (8,700명→8,150명)	679,240	754,216	△ 74,976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비 지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비 지원	21,000	-	21,000
장애인단체 냉·난방비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 추가 지원 (200천원*3월*9개소)	5,400	-	5,400
장애인 돌봄쉼터 이전	- 임차보증금, 부동산중개 및 전세권 등기 수수료, 이사비용, 월임차료, 관리비, 쉼터 비품 구매, 공간조성 공사비	119,600	-	119,600
노인여가 복합시설 조성	- 규모 : 부지 6필지 877.3㎡, 연면적 1,716㎡ - 위치 : 금하로 700 외 5필지(시흥5동) - 기간 : `23. 10. ~ `26. 7.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7,088,000	-	7,088,000
금천한내 어르신복지센터 기능 보강	- 조리실 환풍구 모터(2대) 교체 - 경로식당 및 조리실 시스템 냉난방기 (6대) 교체 및 스탠드형 에어컨(1대) 추가 구매 - 폐컨테이너 처리비	37,430	-	37,430
금천종합 복지타운 시설개선	- 탑골어린이집 무압온수보일러 교체 - 금천종합복지타운 화재감지기 교체 (시흥2동 주민센터, 강당, 요양원, 주차장, 서고, 전기실, 기계실 등)	35,660	-	35,660

세 부 사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2회 추경(안) ②
어르신장애인과				
경로우대 확산	- 노인지회 인력 지원	68,043	67,588	455
경로당 운영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시60:구40),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시50:구50) 부식보조금(월10만원→평균20만원) - 경로당 물품 지원(입식가구 및 가정용 노래방 기기)	963,696	800,496	163,200
장애인 편의증진	- 전동보장구 수리비 증액	42,000	32,000	10,000
하누리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 스프링클러 공사	12,000	-	12,000
금천형 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65세 이상 홀수년생 어르신의 일반 건강검진시 선택진료 비용 10만원 한도 지원	53,950	93,950	△ 40,00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임시보육 이전지원	- 그린리모델링 공사 추진중인 구립어린이집 4개소의 임시보육 장소 사용료 지원 (구비 70%, 자부담 30%)	10,500	-	10,500
출산축하금 지급	- `22. 1. 1. 이후 출생아에 한해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부모가 자녀 출산시 셋째아 700천원, 넷째아 1,000천원 지원 신청인원 감소로 감소조정	45,500	82,400	△36,90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조성	- 위치 :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독산로 32다길 17) - 규모 : 연면적 359.72㎡ (지하1~지상3층) - 기간 : `23. 10. ~ `24. 6. - 총사업비 : 734백만원 - 인테리어 설계비 우선 반영	21,890	-	21,890

○ 특별회계

(단위:천 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업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기 정 액	2회 추경 (안)
1	복 지 지 원 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2,598	-	92,568

6. 검토 의견

가. 구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잉여자금을 적극 활용한 사업 도모, 민선 8기 신규 사업 추진,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여 소요 재원을 편성하였음.
-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편성 현황은 당초예산은 7,103억 5,665만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218억 8,286만원과 제1회 추경 27억 2,913만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8,187억 6,39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1.40% 증가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가 7,859억 5,35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8억 1,036만원임.

나.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

-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 일반회계 183억 8,923만원이 증액되어, 총 3,692억 6,3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5.10%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 복지정책과

기정액(126억 8,087만원)에서 금회 56억 7,433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광복회 사무실 이전 2,585만원 증액 편성
희망온돌 사업비 1,000만원 증액 편성
희망온돌 사업 행사 용역비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다 봄

2) 복지지원과

기정예산(780억 3,999만원)에서 금회 28억 502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7,497만원 감액

3) 어르신장애인과

기정예산(1,578억 3,703만원)에서 금회 98억 5,578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장애인돌봄 쉼터 이전 1억 1,960만원 증액

노인여가 복합시설 조성 70억 8,800만원 증액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개선 3,566만원 증액

금천형 건강검진비 지원 4,000만원 감액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천만원 구비 감추경이 되었으며

구비 절감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함이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 판단됨

4) 가족정책과

기정예산(852억 7,436만원)에서 금회 3억 8,632만원 감액

주요 편성내용으로

출산축하금 지급 3,690만원 감액 편성

금천가족센터 신축 공사비 34억원 증액

출생인원의 감소로 출산축하금 감액 편성되었으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출산축하금 감액 보다 자치구 차원의 장려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봄.

5) 아동청소년과

기정예산(170억 4,183만원)에서 금회 4억 4,041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이전 조성 2,189만원 증액 편성

본 센터의 설치 요건 및 사업 운영에 적정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비로서 사업 즉시성에 타당하다 봄

6) 전 부서

복지가족국 전 부서에 걸쳐 출장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으로 파악되며 적절하다 판단됨

다. 검토의견

2023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은 연간 사업 추진 중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며, 필요 재원이 적극 반영되어 투입되는 만큼 수립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